

18세기 梓宮加漆 의례의 시행과 成文化

金允貞*

I. 머리말	III. 재궁가칠 의례의 성문화 과정
II. 숙종·경종 국상의 재궁가칠 시행과 성격	IV. 맺음말

• 국문초록

18세기 숙종상의 재궁가칠에서 사관과 주서의 입시가 허용되면서, 『승정원일기』에 재궁가칠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숙종상의 경우 장생전재궁이 사용되면서, 은정 위 가칠과 전체가칠의 의례를 구분하여, 3회의 전체가칠 시에만 ‘재궁가칠시곡림의’에 따라 哭禮를 행하고 백관들이 참석하였다. 반면 경종상의 경우 附板梓宮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33회의 전체가칠이 거행되었다. 장생전재궁을 사용한 숙종상에서는 가칠을 마치고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곡-가칠-환여차)이었던 반면, 경종상에서는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한 효종상과 현종상의 전례를 따라 왕이 곡림한 후 여차로 돌아가고 나서 비로소 가칠을 시작하는 의주(곡-환여차-가칠)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숙종상의 전례를 근거로, 의주와 달리 재궁의 가칠을 감독한 후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을 고수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경종상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재궁가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재궁가칠 시 영조는 찬궁의 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동쪽을 향해 앉았다. 재궁가칠을 위해 찬궁의 문을 열고 소금저 등을 치우는 절차가 이루어졌고, 가칠 전후로 관원들과 영조가 직접 재궁의 상태를 奉審했다. 영조는 직접 손으로 재궁의 표면을 만져보고 손톱으로 눌러보면서 재궁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했다. 또한 가칠 과정 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체를 감독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는데, 새로 만든 재궁의 전체가칠 시에도 漆布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영조 때에는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통한 재궁가칠 의례의 성문화가 이루어졌다. 『국조속오례의』의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의주를 절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종상에서 영조는 의주와 달리 가칠 과정을 감독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국조속오례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국조속오례의』 간행 이후 8년 만인 1752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새로운 재궁가칠 의주가 마련되었다.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명은 ‘梓宮加漆儀’지만, 가칠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곡과 가칠, 그리고 왕이 여차로 돌아가는 순서가 변화되었다. ‘재궁가칠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왕이 재궁가칠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가칠을 마친 후 곡하고 퇴장하는 의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조상례보편』의 ‘재궁가칠의’는 절차상의 정합성과 의례적 위상을 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17세기 새로 마련된 재궁가칠 의주의 ‘곡-의식-환여차’의 비전형적 방식을 ‘의식-곡-환여차’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칠-곡-환여차’의 절차가 확립되었다. 또한 내시의 ‘부축[扶引]’을 ‘인도[導]’로 수정한 것은 재궁가칠의를 염습의례와 빈전의례의 중간 단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시의 ‘扶引’은 소렴, 대렴 등의 염습의례와 성복에서 시행되었고, 朔望奠, 啓殯 등의 빈전의례에서는 좌통례가 왕을 ‘導’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재궁가칠 의례는 재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염습의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미 성복 이후 빈전에서 거행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염습의례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내시가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특징이 반영되면서, 의례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내상·소상과의 차별적인 규정이 추가되었다.

주제어 : 國喪, 梓宮加漆,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國朝喪禮補編』

I. 머리말

영조 대 편찬된 『國朝續五禮儀』와 『國朝喪禮補編』에는 『國朝五禮儀』에 없는 재궁 가칠 관련 의례가 포함되었다. 재궁가칠은 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한 梓宮에 옷칠을 더하는 절차로, 17세기에 새로운 국상의례로 등장했다. 재궁가칠의 시행은 재궁 위에 ‘上’字를 다시 쓰고 재궁을 묶어 싸는 의식을 파생시켰고, 가칠을 위한 欝宮의 구조 변화 등을 초래했다.¹⁾ 또한 시신을 안치한다는 현실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예를 극진히 하여 효심을 확인하는 절차 혹은 재궁을 대상화하여 선왕을 추모하는 계기로서의 의례적 의미가 강조되었다.²⁾

이러한 재궁가칠은 효종국상 시 附板梓宮의 사용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서인과 남인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했다.³⁾ 최근에는 인열왕후상에서 처음으로 재궁가칠이 시행되었음을 밝히고, 私家禮의 가칠방식이 국상에 적용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조 대부터 숙종 대까지의 국상에서 재궁가칠 의주가 변화해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새로 만든 재궁과 장생전에 준비된 재궁의 사용에 따라 가칠방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했다.⁴⁾ 그러나 이러한 의주들이 18세기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에서 법제화되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18세기 국상에서 행해진 재궁가칠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국조상례보편』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승정원일기』를 통해 숙종상과 경종상에서 행해진 재궁가칠의 실재를 분석하였다. 숙종상에서 승지와 사관의 입시가 허용되면서, 왕이 친림하는 재궁가칠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었다. 이후 경종상에서 영조는 32회의 재궁가칠에 친림하였고,

1)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설행공간의 건축특성」,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10, 45~47면.

2)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0, 174면; 이육,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민속원, 2017, 144면.

3) 이원택, 「현종대의 服制論爭과 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32~34면; 박미선,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흥례Ⅱ』, 국립중앙박물관, 2018, 77~83면.

4) 김윤정, 「인조~숙종 대 재궁가칠(梓宮加漆)의 시행과 의미」, 『민속학연구』 47, 국립민속박물관, 2020, 120면.

재궁가칠을 철저히 감독하여 상례를 후하게 치르는 厚終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재궁가칠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마련되었고, 국상의례의 정비를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국조속오례의』의 ‘梓宮加漆時哭臨儀’와 『국조상례보편』의 ‘梓宮加漆儀’를 분석하여, 재궁가칠 의례의 성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조속오례의』의 의주는 ‘곡림’에 초점이 두어져 곡림을 한 후 가칠을 했고,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는 가칠 후 곡림하는 순서로서 ‘가칠’ 위주로 수정되었다고 설명했다.⁵⁾ 그러나 곡림과 가칠의 순서보다 왕이 퇴장하는 절차의 배치에 주목하여, 왕의 의례적 역할을 중심으로 『국조상례보편』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조속오례의』의 의주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의주를 절충한 것으로, 경종상에서 실제로 행했던 재궁가칠 의례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국조상례보편』의 ‘재궁가칠의’는 『국조속오례의』의 의주를 대폭 수정하고, 절차상의 정합성과 의례적 위상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국조오례의』에 없는 재궁가칠 관련 의례가 법제화되는 과정은 국가의례의 변화를 고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국가의례는 祖宗典禮를 따른다는 점에서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갖지만, 보편적 윤리인 孝悌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변화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재궁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재궁가칠은 후종을 통한 효제의 실천이었고, 이를 위해 사가례의 방식을 적극 수용하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의 국상을 통해 재궁가칠 의주가 축적되었고, 이러한 의주들을 의례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국조상례보편』에서의 성문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Ⅱ. 숙종·경종 국상의 재궁가칠 시행과 성격

1. 재궁가칠 절차와 入侍

숙종상에서 재궁가칠 시 사관과 주서의 入侍가 허용되면서, 가칠 과정에 대한 구체

5)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한국사상사학』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130면;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144면.

적인 내용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었다.⁶⁾ 이전 국상에서는 재궁가칠 후 문안을 올린 기록이 있을 뿐, 실제 재궁가칠 의례의 시행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1720년(숙종 46) 6월 8일, 숙종은 慶德宮 隆福殿에서 승하했고, 6월 12일 殯殿인 경덕궁 資政殿에 成殯한 후 재궁가칠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6월 25일에 승지와 사관을 재궁가칠에 입시하게 하면서, 6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13회에 걸친 재궁가칠 의례가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었다.

『[肅宗]殯殿都監儀軌』에 따르면 숙종상의 재궁가칠은 銀釘 위 가칠 10회, 은정의 漆布 위 가칠 10회, 전체가칠 3회로 이루어졌다.⁷⁾ 『승정원일기』의 가칠 기록은 은정 위 가칠 3회, 칠포 위 가칠 7회, 전체가칠 3회로서, 6월 27일 이후 경종이 친림한 경우만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상에서는 장생전에 준비되어 있던 100회 이상 옷칠한 재궁을 사용했으므로, 덮개판을 봉합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은정 위에 가칠하고 漆布를 붙여 다시 가칠한 후 전체가칠을 하는 순서로 재궁가칠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칠의 순서는 숙종 대 장생전재궁을 사용했던 명성왕후, 장렬왕후, 인현왕후 국상의 재궁가칠 방식과 동일하다.⁸⁾

장생전재궁을 사용하는 경우, 은정 위 가칠(칠포사용 포함)과 전체가칠은 차등적인 의례로 거행되었다. 은정 위 가칠 시에는 摠護使 이하 담당관원들만이 참석했고 哭禮를 행하지 않았다. 6월 27일의 은정 위 가칠 절차를 살펴보면, 총호사 李健命, 行知敦寧 閔鎮遠, 禮曹參判 金演, 右承旨 韓世良, 假注書 宋寅明, 記事官 趙昌來가 입시했고, 경종은 좌복을 입고 빈전 안으로 들어가 재궁을 안치한 구조물인 찬궁의 서쪽에서⁹⁾ 동쪽을 향해 섰다. 여러 신하들이 북쪽을 향해 부복했고, 漆匠이 차례로 들어와 가칠을 행하고 물러났다. 이진명, 민진원, 김연이 재궁의 상태를 奉審하여 아뢰었고 경종 역시 직접 재궁을 봉심하였다. 봉심을 마친 후 경종과 신하들이 물러나오는 것으로

6)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6월 25일, “梓宮銀釘上加漆入侍時, 院相所啓, 今後加漆入侍時, 承旨·史官各一員入侍事, 定奪.”

7) 『[肅宗]殯殿都監儀軌』(奎14839)에 따르면, 은정 위 가칠 10회(6월 12/15/18/21/23/25/27/30일, 7월 3/5일), 은정 칠포 위 가칠 10회(7월 8/13/17/20/25/28일, 8월 3/8/12/15일) 전체가칠 3회(8월 19/22/26일)를 확인할 수 있다.

8) 김윤정, 앞의 논문, 117면.

9) 이 날 기록에는 빠져 있지만, 7월 3일의 재궁가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7월 3일, “大行大王梓宮銀釘加漆, 入侍, …… 上具衰絰, 東向立於欝宮之西.”).

의례가 마무리되었다.¹⁰⁾ 재궁가칠 시 곡례의 절차는 없지만, 빈전의 內間에서 나인들의 哭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

은정 위 가칠은 장생전도제조와 총호사가 교대로 입시하고, 빈전도감제조와 장생전제조가 각 1인씩 입시하며, 승지와 사관이 각 1인씩 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입시하지 않는 제조와 낭청 등은 閣門 밖에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¹²⁾ 실제로 장생전도제조인 영의정 김창집과 총호사인 우의정 이건명은 8월 8일을 제외하고 교대로 입시했다. 행지돈녕 민진원이 빈전도감제조, 예조참판 김연이 장생전제조로 입시했는데, 김연이 7월 5일 파직되면서 민진원이 장생전제조를 겸직했고 빈전도감제조 심택현 등이 함께 입시했다.¹³⁾ 7월 18일 박태항이 예조참판으로 임명되어 8월 15일에 장생전제조로 입시했다. 그 외 승정원의 승지와 주서, 사관인 춘추관 기사관들이 번갈아 입시하였다. 영조도 연잉군의 신분으로 2회 입시하였다(<표 1>).

전제가칠의 경우는 『[숙종]빈전도감의궤』의 ‘재궁가칠시곡림의’에 따라 거행되었다. 8월 19일 전제가칠의 경우, 내시의 啓請에 따라 경종과 관원들이 빈전 밖의 哭位에서 곡례를 거행했다. 이후 빈전 안으로 이동하여 재궁가칠을 살펴보고 퇴장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¹⁴⁾ ‘재궁가칠시곡림의’에 따르면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外庭에서

10)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6월 27일, “巳時, 上御資政殿, 梓宮加漆時入侍, 摠護使李健命, 行知敦寧閔鎮遠, 禮曹參判金演, 右承旨韓世良, 假注書宋寅明, 記事官趙昌來. 上具衰絰, 東向立, 諸臣北向俯伏. 漆匠以次入, 加漆畢, 漆匠退出. 健命·鎮遠·演, 以奉審之意, 進前白, 上遂就梓宮前, 奉審畢, 復以奉審已畢之意, 進白, 上遂以次退出.”

11) 『승정원일기』에는 ‘內間哭’으로 되어 있는데, 경종상의 재궁가칠에서도 확인된다(『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7월 3일, “內間哭聲喧闐, 漆畢, 健命以下俱退出外.”;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光佐曰, 將事時, 或有相議指揮事, 俾止內間哭聲, 似好矣.”). 빈전의 북쪽 退間에 나인들이 곡하는 장소인 內人哭廳이 마련되었으므로, 내간곡은 나인이 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內人哭廳의 설치에 장경호, 「朝鮮後期 殯殿建築에 대한 研究」,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7, 57면 참조.

12) 『肅宗殯殿都監儀軌』, “以上銀釘漆布上加漆. 因傳教長生殿都提調及總護使, 輪回入侍, 都監提調及長生殿提調各一員式, 輪回入侍, 承旨史官各一員, 亦爲入侍, 無哭臨. 不入侍提調及都廳郎廳, 並參閣門外.”

13)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7월 5일(庚午);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7월 18일(癸未).

14)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8월 19일, “未時, 上御資政殿, 梓宮全體加漆入侍時, 領議政金昌集, 殯殿都監堂上沈宅賢, 右副承旨尹陽來, 假注書申致謹, 記事官呂善長. 上北面, 伏殯殿前, 諸臣以次伏第三級設廳前, 內侍唱哭, 上哭, 諸臣哭. 內侍復唱止哭, 上下皆止哭. 加漆時, 上進于橫宮之東, 諸臣伏於橫宮之北設床卓之傍, …… 加漆既畢後, 諸臣以次退出.”

곡립하는 절차가 있지만,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전체가칠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되자, 김창집은 경종에서 자리에 앉을 것을 청했지만 경종은 선 채로 가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8월 26일 전체가칠에는 8명의 관원이 입시했고, 재궁의 칠색이 좋은 것을 확인하면서 모든 가칠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¹⁵⁾

〈표 1〉 『승정원일기』의 숙종상 재궁가칠 분석

관직	숙종상 재궁가칠 시 입시관원							총		가칠
	장생전도 제조	충호사	빈전도감 제조	장생전 제조	승지	주서	기사관			
6월27일		李健命	閔鎭遠	金演	韓世良	宋寅明	趙昌來	6		은정위 가칠(10회)
7월 3일		상동	상동	상동	韓重熙	李重煥	呂善長	6	연잉군	
7월 5일	金昌集		상동		한세량	송인명	상동	5		
7월17일		이건명	민진원 沈宅賢		尹錫來	申泚	徐宗厦	6		은정칠포위 가칠(10회)
7월20일	김창집		심택현		洪啓迪	徐宗伋	金慶衍	5		
7월25일		이건명	상동		權煥	상동	여선장	5		
7월28일	김창집		상동		윤석래	상동	李廷燾	5		
8월 8일			민진원 심택현		金一鏡	柳應煥	여선장	5		
8월12일		이건명	상동		黃璿	曹命教	상동	6		
8월15일	김창집		심택현	朴泰恒	한중희	서종급	韓斗一	6	연잉군	
8월19일	상동		상동		尹陽來	申致謹	여선장	5		전체가칠(3 회)
8월22일	상동	이건명	趙泰耆 심택현		權煥	상동	상동	7		
8월26일	상동	상동	閔鎭遠 심택현	朴泰恒	尹陽來	姜必愼	상동	8		

15)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8월 26일, “金昌集趨詣上前啓曰, 加漆時刻稍遲, 自上佇立良久, 恐有所妨, 敢達. 上曰, 當仍立矣. 遂進漆, 漆訖, 都提調以下, 又奉審. 奉審後進啓曰, 漆色好矣. 奏畢, 諸臣, 遂退出.”

4년만인 1724년(경종 4) 8월 25일, 경종이 環翠亭에서 승하하자 영조는 적극적으로 재궁가칠에 참여했다. 경종상에서는 附板梓宮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 재궁가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영조는 이어붙인 부판으로 만든 재궁을 사용하는 미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궁가칠에 성심을 다했다. 또한 장생전재궁을 사용한 숙종상과 부판재궁을 사용한 경종상의 차이를 조율하면서 재궁가칠 의례를 정비했다.

8월 26일 소름을 마친 후 장생전에 준비된 재궁의 크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부판재궁의 사용이 논의되었다.¹⁶⁾ 효종상의 전례에 따라 부판재궁을 새로 만들었고, 재궁가칠 방식 역시 전체가칠로 진행되었다. 이미 옷칠을 마친 장생전재궁이 아닌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한 효종상과 현종상의 재궁가칠의 경우, 30회 이상의 전체가칠을 행했다.¹⁷⁾ 또한 효종상과 현종상의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왕이 곡림한 후 여차로 돌아가고[還廬次] 나서 비로소 가칠을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숙종상에서 가칠을 마치고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과 차이가 있었지만, 경종상의 ‘재궁가칠시곡림의’ 의주는 효종상과 현종상의 전례를 따라 마련되었다.¹⁸⁾ 8월 29일 宣政殿에 성빈한 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재궁가칠이 시작되었다.

재궁가칠에는 院相 이광좌, 빈전도감당상 沈檀·李眞儉·李明彦, 장생전당상 沈壽賢·柳重茂, 좌승지 呂必容, 기사관 閔圻·趙迪命이 입시하였다. 좌의정 이광좌는 총호사이자, 국상 중 임시로 국정을 대리하는 원상의 역할을 맡았다. 빈전도감과 장생전당상들이 번갈아 입시했고 승지와 주서, 사관이 입시하는 것은 숙종상과 동일했다. 영조는 최복을 입고 여차에서 補階¹⁹⁾의 최상층으로 걸어 나와 북쪽을 향해 엎드려 곡했다. 여러 신하들 또한 최복을 갖추어 입고 敦禮門²⁰⁾ 밖에 이르러 지팡이

16) 『경종실록』 경종 4년 8월 26일(丙申).

17) 효종상에서는 부판재궁을, 현종상에서는 부판이 아닌 全板으로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했다. 부판과 전판의 차이가 있지만, 재궁을 새로 만들면서 전체가칠이 거행되었다(김윤정, 앞의 논문, 115면).

18) 구체적인 의주의 분석은 다음 장의 〈표 2〉 참조.

19) 보계는 국가의례 시 계단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원래의 계단에 階板을 덧붙여 설치한 것이다.

20) 돈례문은 선정전의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경계가 되는 문으로, 의례 공간을 구분하는 閤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문은 의례가 선행될 때 경계로 작용하는데, 구체적인 문으로 지적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선정전의 재궁가칠 의례에서 돈례문이 합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추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합문의 개념은 경세진, 「합문을 통해 본 조선시대 궁궐의 내외개념」,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들어와서 보게 최하층에 이르러 곡했다. 영조는 곡을 그친 후, 지팡이를 짚고 빈전인 선정전에 들어가 欝宮의 서편에 서서 동쪽을 향해 섰다. 이어서 가칠이 시작되었고, 가칠이 끝난 후 영조는 여차로 돌아가고 신하들도 퇴장했다.²¹⁾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조는 의주의 ‘곡·환여차-가칠’이 아닌 ‘곡-가칠·환여차’의 절차로 재궁가칠을 시행했다. 이진검이 “절목에는 전하께서 여차에 돌아가신 후에 가칠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자, 영조는 숙종상에서 경종이 재궁가칠에 함께 입시했었던 전례를 제시했다. 9월 4일 재궁가칠 시 이광좌는 의주와의 차이를 다시 거론했다. 영조는 “의주의 내용이 아무리 이와 같더라도 지금 찬궁을 열어 놓았는데 어찌 여차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고집했고, 결국 의주와 다른 ‘곡-가칠·환여차’의 방식으로 재궁가칠이 시행되었다.²²⁾ 숙종상에서 경종이 재궁가칠에 참석했던 전례에 따라, 영조는 의주와 달리 재궁가칠을 감독한 후 여차로 돌아가는 절차를 고수했다.

경종상의 재궁가칠은 전체가칠로 진행되었으므로, 숙종상의 은정 위 가칠과 달리 매 회 곡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다. 백관들도 외정에 모여 곡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전체가칠이 3회였던 숙종상과 달리 33회의 전체가칠을 행하는 경종상의 경우, 백관의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모든 관원이 격일로 모여서 곡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니, 2품 이상, 三司의 長官, 侍從臣들만 와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³⁾ 곡하는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새로 만든 재궁을 전체가칠했던 현종상에서부터 마련된 것이었고,²⁴⁾ 경종상에서 다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梓宮加漆, 院相李光佐, 殯殿都監堂上沈檀·李眞儉·李明彦, 長生殿堂上沈壽賢·柳重茂, 左承旨呂必容, 記事官閔圻·趙迪命入侍. 上具衰服, 自廬次步出於補階第一等, 上北向俯伏哭, 諸臣亦服衰經, 至敦禮門外, 輯杖趨入, 至補階最下層, 助哀. 上哭盡哀, 止哭, 扶杖入宣政殿, 立於欝宮西東向. 眞儉進伏曰, 加漆節目中, 殿下還廬次後始役矣. 上曰, 庚子年, 同爲入侍矣. …… 加漆畢, …… 上還廬次, 諸臣以次退出.”

22)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眞儉進伏曰, 加漆節目中, 殿下還廬次後始役矣. 上曰, 庚子年, 同爲入侍矣.”;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4일, “光佐曰, 儀註則哭後, 殿下還廬次, 摠護使以下, 看檢着漆矣. 上曰, 儀註雖如此, 方開欝宮, 何可還廬次乎?”

23)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光佐曰, 百官間日會哭, 太涉煩數, 二品以上三司長官侍從臣, 只許來會, 爲宜矣. 上曰, 依爲之.”

24)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8월 25일.

또한 전체가칠은 은정 위 가칠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1차 가칠 시 영조는 선 채로 가칠 과정을 살폈다. 2차 가칠에서 이광좌는 우리나라에는 서 계시는 예는 없고 앉아 계시는 예만 있다는 점에서 좌정할 것을 요청했다. 영조는 이를 받아들여 찬궁의 서쪽에 있는 素褥에 앉았다.²⁵⁾ 9월 10일의 경우, 巳時에 시작된 가칠이 정오를 넘기자 영조는 慈殿께서 수라를 드셨는지 문안하기 위해 내전에 들어 갔다가 다시 나왔다. 10월 13일에는 오시에 시작한 가칠이 어두워진 후에야 마무리되었다.²⁶⁾

이렇게 33회의 전체가칠이 진행되었고, 영조는 1회를 제외하고 모두 친림했다. 9월 8일에는 감기로 인해 재궁가칠에 불참했지만, 승전색을 통해 모든 절차를 계달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례에 관여했다. 영조는 “명나라 仁宗이 太子였을 때 병중에 제사를 설행하게 되자 그 당시 신하들이 힘껏 말렸으나, 인종이 듣지 않고 제사를 설행하면서 많은 땀을 흘리고는 곧바로 병이 나왔다.”는 고사를 거론하며 친림을 주장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했다.²⁷⁾ 대신 9월 10일에는 기침을 계속하는 상태로 친림했고, 가칠이 끝난 후 다시 나올 것을 청하는 이광좌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²⁸⁾

孝悌의 실천자인 聖人君主를 지향하는 영조의 첫 번째 과업은 경종상의 수행이었고, 영조는 경종상의 재궁가칠에 친림하여 성심을 다했다.²⁹⁾ 이 과정에서 의주의 규정과 달리, 가칠을 마친 후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궁가칠 과정을 감독했다. 이후 경종비 선의왕후상에서도 부판재궁을 사용했고 영조가 친림했지만, 왕후의 내상이라는 점에서 사관과 주서의 입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2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4일, “光佐曰, 頃日加漆時, 殿下終始立侍矣, 我朝無立侍之禮, 只坐侍矣. 坐侍, 何如? 上曰, 依爲之. …… 上遂坐橫宮西素褥上.”

26)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0일, “上曰, 日中矣, 欲奉問兩慈殿水刺與否矣. 入內還出, 卿等善爲看檢.”;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15일, “沈檀曰, 十三日, 緣日暮促迫, 未及致精, 故不能如前矣.”

27)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7일, “上曰, 皇明仁宗, 爲太子時, 當攝祀, 其時臣子力請, 而仁宗不聽之, 爲攝祀, 大汗流, 仍卽瘳. 卽今則比仁宗攝祀, 顧不重耶? 大臣累累陳達之言, 非不知之, 而予何忍爲不參乎?”;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8일, “上以承傳色下教曰, 昨日以一二日調攝爲請, 故今日加漆時, 不得出臨, 摠護使以下, 必須十分善爲之, 奉審後, 頻招承傳色, 續續啓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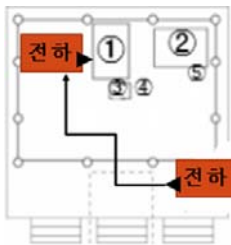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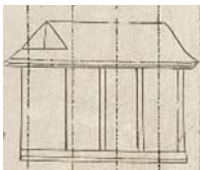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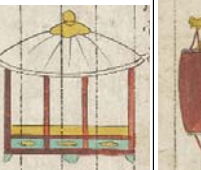
28)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0일, “光佐又啓曰, 久臨冷地, 聞有咳嗽之音, 外感尚未快減矣. 其在謹慎之道, 還入廬次似好, 惶恐敢達. 上曰, 磨畢矣, 加漆則必不多時矣, 上親又奉審.”

29) 영조의 성인군주론은 김자현 저, 김백철·김기연 역, 『왕이라는 유산』, 너머북스, 2017 참조.

에 수록된 경종상의 재궁가칠 기록은 재궁가칠의 실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재궁가칠의 방식과 왕의 역할

재궁가칠은 殯殿에 모신 재궁을 대상으로 거행되었다. 왕이 승하한 장소에서 襲, 小斂, 大斂 등의 염습의례가 거행되었고, 대렴한 시신을 재궁에 모신 후 빈전에 마련된 欝宮에 안치했다. 찬궁은 집모양의 구조물로 빈전 안 북쪽 편에 설치했고, 옆에는 ‘大行王梓宮’이라고 쓴 銘旌을 세웠다. 찬궁 남쪽에는 魂帛을 모신 靈座, 동쪽에는 평소 사용하던 베개, 옷, 이불, 세숫대야 등을 놓아두는 靈寢을 설치하여 成殯을 마쳤다. 영좌와 영침은 평상 위에 설치하고 지붕 모양의 덮개인 滿頂骨을 설치하여 보호했다. 낮에는 혼백을 영좌에 모시고 저녁이면 영침으로 옮겨서, 생시와 같음을 형상화했다. 이후 산릉으로 이동하는 發引 전까지 약 5개월간, 빈전은 국상의례를 거행하는 주요 공간이 되었다.³⁰⁾

①찬궁 ②영침 ③영좌 ④명정 ⑤세수대야, 빗	①찬궁	②영침만정골	③영좌만정골	④명정
				

〈그림 1〉 경종상의 殯殿 구성과 재궁가칠시곡림의의 동선(『[景宗]殯殿都監儀軌』)

『승정원일기』를 통해 경종상에서 행해진 구체적인 재궁가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재궁가칠을 위해서는 먼저, 찬궁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야 했다. 『국조오례의』의 찬궁은 발인 전까지 재궁을 봉안하기 위한 밀폐형 구조였는데, 17세기 재궁가

30) 구체적인 국상절차는 이 옥, 앞의 책 참조.

칠이 시작되면서 개폐형 구조로 변화되었다.³¹⁾ 관원이 찬궁 문을 열 것을 아뢰어 왕의 허락을 얻으면, 내시가 문을 열었다. 내시나 칠공이 素錦褚를 찬궁의 북쪽 문으로 당겨서 꺼내고 명주이불 등을 걷어서 전 안의 서편에 두었다.³²⁾ 가칠을 마치면, 반대의 과정으로 찬궁을 닫는 절차가 시행되었다. 가칠 전후로는 관원들과 영조가 직접 재궁의 상태를 확인하는 奉審을 거행했다. 찬궁 안이 어두울 때는 촛불을 사용하여 불심했다.

칠장들은 재궁의 바닥판을 칠하기 위해 漆塊에 재궁을 올렸고, 덮개판을 가칠할 때는 결상 위에 올라가서 칠했다.³³⁾ 가칠은 3번 옷칠하고 1번 갈고 다듬는[磨正]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5번 칠한 뒤에 1번 磨正하는데, 경종상의 재궁가칠에서는 더욱 정밀하게 하기 위해 자주 마정을 행했다.³⁴⁾ 가칠에 사용하는 옷의 경우, 每漆과 全漆을 섞어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칠의 종류를 달리했다.³⁵⁾ 매칠은 나뭇결이나 흠집을 가리는 용도로, 生漆은 광택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칠을 마무리하면서 격일로 생칠을 사용했는데, 매번 갈고 다듬어 광을 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³⁶⁾

가칠은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었다. 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칠의 건조가 중요했고, 잘 건조되지 않을 경우 얼룩이 생기기도 했다. 칠을 잘 말리기 위해, 젖은 깔개와 젖은 장막을 사용하여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시키거나,³⁷⁾ 반대로 찬궁의 문을 열어두어 환기시키기도 했다.³⁸⁾ 가칠이 진행되는 동안

31) 신지혜, 앞의 논문, 45~47면.

32)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15일, “內侍啓內戶, 撤素衾·紫赤衾等物, 置殿內西邊.”

33)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上曰, 地板亦着漆, 則移所鋪茵褥, 而亦當用漆塊矣.”;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2일, “匠手安凳牀, 加漆天板.”

34)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4일, “光佐乍退進伏曰, 問諸匠手, 凡漆五度一磨矣. 今則因特教磨精, 此後則三度一磨, 宜矣.”

3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6일, “上曰, 專用生漆, 則恐難拵木理, 先用埋漆, 以減其痕, 然後用漆, 宜矣.”;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4일, “壽賢曰, 自初全漆, 每漆參半用之, 而務用清者, 故難於多用矣.”; 전칠, 매칠, 생칠은 옷의 종류로 추정된다. 옷은 생산지, 생산시기, 정제방식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현재로서는 조선시대 옷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36)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21일, “畢漆後, 當加生漆, 而生漆, 則不可逐日爲之, 必須間日. …… 上曰, 日氣漸寒, 結裹爲急, 以三十度爲定後, 生漆則限生色爲之.”

37)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明彦曰, 鋪濕席然後, 漆可乾.”;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4일, “明彦曰, 土宇以熱湯, 沃其土, 以素錦帳覆之, 使風氣不入, 故一日一夜間, 能再乾矣.”

재궁 위에는 소금저를 씌우고 다시 명주이불을 덮었다. 그런데 명주이불이 너무 두껍고 촘촘하여 칠이 마르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가례의 방식에 따라 흰색 휘장[素帳]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³⁹⁾ 날씨가 추워지면서 명주이불을 다시 사용했고, 시신을 얼지 않게 하기 위해 털휘장도 준비해 두었다.⁴⁰⁾

영조는 이러한 가칠 과정 전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영조는 가칠상태를 봉심하면서, 대패질한 흔적이나 부판의 흠에 대해 지적했고 가칠을 해도 광택이 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경종상에서 사용된 부판재궁의 경우, 사방판은 전판을 사용하고 덮개판과 바닥판의 경우 2개의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 작은 나무로 2개의 판자를 연결시킨 후 옷칠하여 만들었다.⁴¹⁾ 이광좌와 심수현 등은 가칠을 거듭하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영조를 안심시켰다.⁴²⁾ 대신들은 대부분 집안의 상례를 통해 가칠의 경험이 많았고, 사가례의 경험적 지식으로 영조를 설득할 수 있었다.

영조는 재궁을 봉심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재궁의 표면을 만져보고 손톱으로 눌러 보면서 재궁의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했다.⁴³⁾ 칠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장수를 불러 붓을 잡고 흠이 있는 곳을 가칠하였다.⁴⁴⁾ 영조의 자리는 찬궁의 서쪽으로, 서쪽 문을 열고 가칠이 진행되었으므로 재궁의 동쪽 부분은 奉審이 어렵고 가칠이 미흡했

38)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11일, “沈壽賢曰, 前日開北戶, 故漆似速乾, 北戶則閉之, 而開東邊戶, 何如?”

39)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0일, “庶人家, 只用素帳, 國家則用大段衾擁鬱太甚矣. 改造素帳, 輪回覆之, 好矣.”

40)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19일, “光佐曰, 問于匠手, 則以爲今猶不至極寒, 姑俟凍寒後襦衾上, 加揮毛揮帳, 爲宜云矣.”

41) 『승정원일기』 경종 4년 8월 28일, “天地板合縫處, 穿作隱穴兩處, 用小木貫之, 著漆合之. 看之無罅隙, 以爪抓之, 亦無痕, 至於地板, 則微似有痕, 蓋地板近地, 人所難見, 故匠手不能致精鑢之, 似不如天板之精矣.”

42)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0일, “壽賢曰, 雖以閭閻事言之, 治棺時, 代牌雖極精, 爲之加漆, 則必有代牌痕矣. 上曰, 板縫間欠處, 以漆填之, 則好乎? 壽賢曰, 準漆則自然無欠處, 而即今比初稍勝矣. 上曰, 屢漆則必光潤, 而累次不光, 何耶? 壽賢曰, 即今則加漆不甚多, 故如是矣. 光佐曰, 雖未光潤, 比前稍勝矣.”

43)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6일, “上奉審梓宮, 以玉手捫凹處曰, 如此處最爲拗矣.”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5일, “上, 以手爪試點之, 光佐曰, 以手爪點之, 則猶恐生痕矣.”

44)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4일, “漆畢, 上親又奉審, 招匠手, 持漆筆加漆欠處後, 上還復位, 倚杖立.”

다. 영조는 직접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찬궁의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쪽 문을 열고 가칠하게 했다.⁴⁵⁾

영조는 가칠의 과정 전체를 감독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재궁의 바닥면을 칠하기 위해 재궁을 칠피 위로 봉안할 때 장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내시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⁴⁶⁾ 또한 가칠 시 장인이 출입하게 되므로, 다른 깔개를 하나 더 퍼두도록 명령했다. 또한 칠포사용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효종상과 인선왕 후상에서는 칠포를 사용했지만, 현종상에서는 許積의 칠포무익론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 칠포는 『국조오례의』의 대렴 조에 근거하여, 시신을 재궁에 안치하고 덮개판을 고정할 때 은정 위에 細布를 붙이고 옷칠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⁴⁷⁾ 이러한 칠포는 이미 가칠을 마친 장생전재궁의 덮개판을 고정할 때 유용하지만, 새로 만든 재궁을 전체가칠할 경우에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칠포를 붙이면 그곳이 반드시 불룩하게 올라오게 되어 종내 쓰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다. 전에는 다 100번을 칠한 재궁을 썼으므로 판을 맞붙인 곳에 틈이 있을까 염려하였으나, 지금은 재궁에 모신 뒤에 비로소가칠하여 여염의 규례와 다름이 없으니, 칠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하니 …… 이명언이 아뢰기를, “습木한 곳에 과연 틈이 없다면 칠포를 쓰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 덮개판은 깎아 내고 맞추어 측량하는 것이 바닥판만 못하지 않지만, 下棺한 뒤에 비로소 판을 맞붙이므로 무릇 작업하는 사이에 아무래도 자연스레 규격에 맞게 되는 바닥판만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한나절 사이라도 나무가 휘게 되니, 이것이 덮개판을 봉합하는 것이 끝내 지판에 틈이 없는 것보다 못한 이유입니다.” 하였다.⁴⁸⁾

4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1일, “遂啓橫宮東戶, 奉審教曰, 漆色, 何如? 重茂對曰, 弗如西隅矣. …… 上移坐橫宮東戶外.”

46)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上曰, 奉安於漆魂上也. 誰當執事? 不可使匠手爲之. 光佐曰, 當使內侍奉安矣. …… 上曰, 着漆時匠手當入, 而卽今所鋪茵褥, 非匠手輩所可踏者, 令都監, 入他席鋪其上, 可也.”

47) 『國朝五禮儀』 권7, 「凶禮·大斂」, “加蓋設衽, 其合縫處, 周回以漆塗細布.”

48)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9일.

영조는 장생전재궁과 새로 만든 재궁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했고, 후자의 경우 칠포 사용이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명언 역시 틈이 없다면 칠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광좌는 비록 현종상에서는 칠포를 쓰지 않았지만, 이전의 규례를 폐할 수 없으므로 칠포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덮개판은 대령 후에 고정하는 것으로 바닥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칠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조는 결국 이광좌의 주장을 따라 칠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가칠이 진행되는 동안, 국상 관련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졌다. 『국조오례의』에서 내시가 왕의 사망을 확인하는 屬纊을 행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조오례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⁴⁹⁾ 또한 虞祭의 일정과 당일 返魂 여부, 산릉의 治葬 시 私墓의 이장, 발인 경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⁵⁰⁾ 경종 독살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영조는 厚終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경종상의 재궁가칠 과정은 국상의례 정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재궁가칠 의례의 성문화 과정

1. 『국조속오례의』 의주의 성격

1744년(영조 20) 『국조속오례의』에서 재궁가칠 의례가 최초로 법제화되었다.⁵¹⁾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재궁가칠에 앞서 告由하는 절차인 ‘梓宮加漆告由奠朝奠兼行儀’와 ‘재궁가칠시곡림의’의 2가지 의주를 통합한 것이었다. 재궁을 가칠하는 당일에

49)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6일, “明彦曰, 甲寅年呼復一節, 其時禮曹判書張善徵爲之, 庚子年使禮曹判書李觀命爲之. 觀命云, 張善徵, 以外戚爲之, 終非禮判之任也, 辭而不爲. …… 明彦曰, 五禮儀古今異宜, 且多疎略未備, 有不可一一遵用者, 臣願稽諸典禮, 參以時宜, 作爲一通, 以便於倉卒急遽之用, 好矣.”; 이 기록에는 復의 절차로 되어 있지만, 『숙종실록』에는 屬纊에 대한 논의 등장한다. 복의 경우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 모두 내시가 거행하는 것으로 변화가 없고, 屬纊의 경우 내사에서 宗戚의 신하로 주관자가 변화된다. 위의 논의는 屬纊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50)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5일; 10월 9일.

51) 『國朝續五禮儀』의 재궁가칠 의례는 ‘梓宮加漆時哭臨儀’, ‘梓宮上字書寫時哭臨儀’이고 ‘梓宮結褻時哭臨儀’는 ‘재궁상자서사시곡림의’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朝奠을 겸하여 사유를 고하는 ‘재궁가칠고유전조전겸행의’는 효종상부터 시행되었다.⁵²⁾ 왕이 참석하여 곡하고, 代奠官이 三上香-奠酒-讀祝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의주를 간소화하여, 대전관을 大祝으로 수정하고 “조전에 대축이 가칠의 사유를 고한다.”라고 정리했다.

이후의 절차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재궁가칠시곡림의’를 절충한 형태로 마련되었다. 효종상부터 경종상까지의 ‘재궁가칠시곡림의’를 분석하여 『국조속오례의』 의주의 연원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의주들은 동일한 국상의 경우라도 자료마다 다른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효종]빈전도감의궤』의 의주는 효종상의 『稽制司謄錄』 의주와 차이를 보인다.⁵³⁾ 『[현종]빈전도감의궤』의 의주는 『[효종]빈전도감의궤』와 같지만, 『현종국휼등록』에는 세부 내용이 추가된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의주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화의 양상에 주목하여 함께 검토하였다(<표 2>).

‘재궁가칠시곡림의’는 크게 ‘입장-곡-지곡-가칠-퇴장’으로 구분된다. 입장의 경우 ①은 총호사, 빈전도감제조, 장생전도제조 등이 칠공을 거느리고 빈전의 계단 아래에 나아가 부복하는 절차로서, 모두 동일하다. 효종상 의주의 경우, 영의정이 장생전도제조, 좌의정이 총호사임을 표시했고 칠공을 칠장으로 쓰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내용은 일치한다. ②는 인의의 인도에 따라 종친·문무백관이 외정에서 位를 달리하여 겹줄로 정렬하는 절차로서,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인정전정’이 ‘외정’으로 바뀌고, 종친·문무백관들이 북향한다는 세부내용이 추가된 정도이다. ③은 왕이 杖을 짚고 哭位로 나가는 절차로서, 효종상에서는 곡위가 “朝夕奠의 곡위와 같다.”는 점을 명시했다.⁵⁴⁾ 내시가 부축하는[內侍扶引] 절차는 효종과 현종의 『빈전도감의

52) 『[孝宗]殯殿都監儀軌』, “梓宮加漆告由奠·朝奠兼行儀. 其日朝奠, 攸司進禮饌, 內侍傳捧, 入設於靈座前, 設香爐·香合, 并燭於其前, 奠祝文於靈座之左, 置盞三於尊所. 又內侍設盥櫛之具于靈座側, 殿下杖入就哭位, 跪俯伏哭, 代奠官盥手, 陞自東偏階詣香案前, 北向跪三上香, 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爵. 代奠官進靈座之左, 西向跪. 讀祝文訖, 俯伏興退, 殿下哭盡哀, 還廬次, 內侍捧祝文焚於爐. 置銅爐於露臺之西.”

53) 장서각 소장 『稽制司謄錄』의 의주에는 『[효종]빈전도감의궤』과 달리 ‘內侍扶引’이 포함되어 있지만, 哭位와 拜禮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다.

54) 『국조속오례의』의 朝夕哭奠及上食儀, 朔望奠, 啓殯, 遣奠 등 빈전에서 행해진 의례에서 왕의 자리는 빈전 戶外의 동쪽에 西向하여 설치되었다(『國朝五禮儀』 권7, 「凶禮·朝夕哭奠及上食儀」, “每日未明, 掖庭署, 設殿下位於殯殿戶外之東西向.”). 효종상 이후의 의주에는 곡위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

궐』의주에는 빠져있지만, 효종상의 『계제사등록』에는 수록되어 있다. 內侍扶引은 효종상부터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곡의 경우, ⑤는 왕이 부복하여 곡하는 절차인데, 숙종상에서는 내시가 啓請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다.(④) ⑥은 도제조와 총호사 이하가 곡하는 절차로서, 효종상의주에는 빠져있다. ⑦은 찬의가唱하면 종친과 문무백관도 꿇어앉아 부복하여 곡하는 절차로서, 모든 의주가 동일하다.

지곡의 경우, ⑨는 왕이 곡을 그치는 절차로서 모든 의주가 동일하다. 다만 숙종상에서는 내시가 전하의 지곡을 계청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다.(⑧) ⑪은 도제조와 총호사 이하가 지곡하는 절차로서, 효종상 의주에는 빠져있다. ⑫는 찬의가 창하여 종친과 문무백관이 지곡하는 절차로서, 모든 의주가 동일하다.

가칠의 경우, ‘가칠을 마친다’는 내용만이 수록되어 있다.(⑬) 구체적인 가칠의 방식은 규정되지 않았다. ‘재궁가칠시곡림의’는 가칠 자체가 아닌 곡림의 절차에 주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칠을 행하는 시점이, 왕이 여차로 돌아간 이후인지 이전인지의 문제는 의주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퇴장의 경우, ⑩은 왕이 여차로 돌아가는 절차이다. 효종상의 경우 가칠 전에, 왕이 곡을 마치고 바로 여차로 돌아가는(곡-환여차-가칠) 반면, 숙종상에서는 곡과 가칠을 마친 후에 여차로 돌아갔다.(곡-가칠-환여차, ⑩) 『현종국홀등록』과 『[경종]빈전도감의궤』의 경우 효종상과 같이 곡-환여차-가칠의 방식이지만, 참석자가 모두 지곡한 후 왕이 ‘환여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숙종상에서는 내시가 왕을 扶引하여 여차로 돌아가는 세부내용이 추가되었다.⁵⁵⁾ ⑭는 도제조와 총호사 이하가 퇴장하는 절차로서, 효종상에는 빠져있다. ⑮는 백관 이하가 퇴장하는 절차로서, 효종상에서는 백관과 제조 이하가 사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앞서 인열왕 후상의 재궁가칠에서 백관이 사배를 했던 것과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이후 의주에서도 백관은 사배를 하지 않았고, 인의가 종친과 문무백관을

지만, 빈전의례의 곡위와 같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승정원일기』에는 ‘伏殯殿前’으로 불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주)14 참조.

55) 『현종국홀등록』과 『[경종]빈전도감의궤』 의주의 경우, 입장 시에는 內侍가 扶引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퇴장 시에는 내시의 역할이 빠져있다. 『승정원일기』의 재궁가칠 기록에는 입장과 퇴장 시 모두 내시의 역할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의주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6) 김윤정, 앞의 논문, 110면.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상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현종국휼등록』의 의주에서 세부적인 절차의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외정에서 북향하고(②), 도제조 이하가 곡·지곡하고 퇴장하는 절차(⑥⑪⑭)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현종 대 인선왕후상의 의주에서 갖추어졌고, 이후 대상과 내상에 모두 적용되었다.⁵⁷⁾

그런데 숙종상의 의주는 왕의 환여차 시점이 가칠 이후로 규정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은 재궁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효종상과 현종상에는 크기의 부족으로 장생전에 마련된 재궁을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재궁을 새로 만들어 30회 이상의 전체가칠을 시행했다. 반면, 숙종상의 경우 100회 이상의 옷칠을 거친 장생전재궁을 사용하면서, 역시 장생전재궁을 사용했던 인선왕후, 명성왕후 등의 內喪 의주를 따랐다. 경종상에서는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하면서 현종상의 의주를 따랐기 때문에, 환여차의 시점이 가칠 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숙종 대에는 4번의 내상을 치렀고 숙종상에서 내상과 같이 장생전재궁을 사용하면서, 내상의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상의 경우 왕비의 상례라는 특성상 자손인 왕이 가칠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칠 이후 환여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⁵⁸⁾ 또한 숙종상의 의주에만 보이는 ‘內侍 啓請’ 역시 내상 의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내시 계청은 인선왕후상의 ‘재궁가칠시곡림의’에는 없지만, ‘朔望奠儀’에 등장한다.⁵⁹⁾ 또한 숙종 대 명성왕후상의 ‘梓宮加漆告由寒食奠兼行儀’, 인현왕후상의 ‘삭망전의’, ‘재궁가칠시곡림의’ 등에 수록되었다.⁶⁰⁾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57) 『仁宣王后國恤謄錄』 2, 「梓宮加漆時哭臨儀」, “加漆時至, 摠護使·殯殿都監提調·長生殿都提調及提調以下, 詣殯殿閣門外俯伏, 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入就外庭, 異位重行北向, 內侍扶引殿下杖就哭位, 跪俯伏哭, …… 加漆訖, 內侍扶引殿下還廬次, 王世子還次, 都提調及摠護使以下出, 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出.”

58) 김윤정, 앞의 논문, 114면.

59) 『仁宣王后國恤謄錄』 2, 「朔望奠儀」, “內侍, 啓請止哭, 殿下止哭.”; 『仁宣后殯殿都監儀軌』의 삭망전에는 내시가 아닌 좌통례가 계청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지만(『仁宣后殯殿都監儀軌』, “朔望奠 …… 左通禮俯伏跪, 啓請跪俯伏哭, 殿下跪俯伏哭.”) 『인선왕후국휼등록』의주는 좌통례가 아닌 내시 계청에 대한 첫 번째 기록으로서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60) 『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 “梓宮加漆告由寒食奠兼行儀 …… 內侍啓請止哭, 殿下止哭.”;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 “內侍跪贊請跪俯伏哭, 王世子跪俯伏哭. …… 梓宮加漆告由朝奠兼行儀 …… 內侍贊請止哭, 王世子止哭 …… 梓宮加漆時哭臨儀 …… 內侍贊請跪俯伏哭, 王世子跪俯伏哭.”; 인현왕후상은 內喪在先이므로, 세자의 행례에 맞춰 ‘贊請’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빈전의례에서 왕이 행할 의식 절차를 아뢰는 계청은 대상과 내상의 구분없이 통례원의 정3품 관원인 좌통례가 담당했다. 그런데 『국조상례보편』에서는 내상의 경우 관원이 빈전에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내시가 계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⁶¹⁾ 숙종상의 의주에서 좌통례가 아닌 내시가 계청한 것은 내상 의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국조속오례의』의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의주를 절충한 방식이었다. 숙종상의 의주와 같이 내시가 왕의 입장과 퇴장 시 扶引했고, 곡과 지곡 시 啓請했다. 『국조속오례의』의 의주에는 내시가 계청할 때 俯伏한다는 내용이 보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국조속오례의』에서는 환여차의 시점이, 경종상의 의주와 같이 가칠 이전으로 규정되었다. 문제는 실제 경종상의 재궁가칠이 의주대로 시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조속오례의』에 이 의주가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영조가 경종상의 재궁가칠에 친림하고 가칠 과정을 감독한 후 여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주의 내용은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결국 『국조속오례의』 간행 이후 8년만인 1752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절차를 대폭 수정한 ‘재궁가칠시곡림의’가 새로 마련되었다. 이 의주는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에서 ‘재궁가칠의’로 항목명이 변경되었다.⁶²⁾

〈표 2〉 梓宮加漆時哭臨儀의 분석

		『[효종]빈전도감의궤』 『[현종]빈전도감의궤』	『현종국휼등록』 『[경종]빈전도감의궤』	『[숙종]빈전도감의궤』
입장	①	加漆時至, <u>領議政長生殿都提調</u> · <u>左議政摠護使</u> · <u>殯殿都監提調</u> 及 <u>長生殿提調</u> , 率漆匠, 入就殯殿階下, 俯伏	加漆時至, <u>總護使</u> · <u>殯殿都監提調</u> · <u>長生殿都提調</u> 及 <u>提調</u> , 帥漆工, 入就殯殿階下, 俯伏	좌동
	②	[引儀], 分引 <u>宗親</u> · <u>文武百官</u> 入就仁政殿庭, 異位重行	[引儀], 分引 <u>宗親</u> 及 <u>文武百官</u> 入就外庭, 異位重行, 北向	좌동
	③	<u>殿下</u> 杖就哭位(與朝夕奠哭位同)	[內侍], 扶引 <u>殿下</u> 杖入就哭位	좌동

61) 『國朝喪禮補編』 권4, 「受教分類上」·朔望奠, “編輯堂上洪啓禧所啓, 五禮儀及補編朔望奠, 通禮, 導殿下, 啓請行禮, 無內外喪之別矣. …… 今此編輯時, 凡殯殿行禮儀註, 通禮下, 以內喪則內侍, 懸註乎? 敢達. 上曰, 自內, 則通禮不得入, 故內侍爲之矣. [戊寅]”

62) 1752년본은 빈전과 빈궁을 구분한 형태의 의주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후 『국조상례보편』은 1758년본을 의미한다.

곡	④	×	×	內侍跪, 啓請跪俯伏哭
	⑤	跪俯伏哭	跪俯伏哭	殿下, 跪俯伏哭
	⑥	×	都提調及總護使以下, 哭	좌동
	⑦	[贊儀]唱跪俯伏哭, 宗親·文武百官, 跪俯伏哭	좌동	좌동
지곡	⑧	×	×	內侍跪, 啓請止哭
	⑨	殿下止哭	좌동	좌동
	⑩	還入廬次	→⑩	→⑩
	⑪	×	都提調及總護使以下, 止哭	좌동
	⑫	[贊儀]唱止哭, 宗親·文武百官, 止哭	좌동	좌동
가칠	⑬	加漆訖	→⑬	加漆訖
퇴장	⑩		殿下還廬次	→[內侍], 扶引殿下還廬次
	⑬		→加漆訖	
	⑭	×	都提調及總護使以下, 出	좌동
	⑮	百官及提調以下, 以次退出(無四拜禮)	[引儀], 分引宗親·文武百官出	좌동

비고: []는 집례자, □는 행례자로 구분했다. →는 절차의 이동을 의미한다. ‘가칠’은 음영으로, ‘환여차’는 세로줄로 표시하여 순서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2. 『국조상례보편』 ‘재궁가칠의’의 성격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의 재궁가칠 의례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표 3>). 먼저 의절의 명칭이 각각 ‘재궁가칠시곡림의’(전자)와 ‘梓宮加漆儀’(후자)로 차이가 있었다. 명칭만으로 전자는 곡림의, 후자는 가칠의가 중심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후자에서 재궁가칠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⁶³⁾ 두 의주 모두 ‘가칠을 마친다.’는 ‘加漆訖’ 3자가 가칠 관련 규정의

(63) 반면, 『국조속오례의』의 梓宮結褵時哭臨儀와 달리 『국조상례보편』의 梓宮結褵時哭臨儀(1752년 본)과 梓宮結褵儀(1758년본)에는 재궁을 묶고 싸는 구체적인 방식이 추가되었다(『國朝喪禮補編』

전부이다. 두 의주는 곡림과 가칠의 순서뿐만 아니라 왕이 환여차하는 절차의 배치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왕의 역할을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후자에서 ‘재궁가칠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왕이 재궁가칠 과정을 살펴본 후 곡하고 퇴장함으로써, 가칠과 곡이 하나의 절차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서 왕이 곡림을 마친 후 퇴장하여 여차로 돌아가는 것과의 차이가 강조된 것이었다.

따라서 두 의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궁가칠의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왕, 도제조 이하, 문무백관 등이 입장하여 곡과 지곡의 절차를 마친 후, 왕이 환여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재궁가칠이 시작되었다.(입장-곡-환여차-가칠⑦) 재궁가칠이 끝나면 도제조 이하와 백관이 퇴장하는 것으로 의례가 마무리되었다. 반면 후자에서는 왕 이하가 입당한 후 재궁가칠이 이루어졌고, 가칠 이후에 곡하고 퇴장하는 절차를 행했다.(입장-가칠-곡-환여차,⑦)

이러한 변화는 숙종상과 경종상을 통해 왕이 재궁가칠을 감독하는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입장-가칠-곡-환여차’는 숙종상의 ‘입장-곡-가칠-환여차’ 절차와도 차이를 보인다. 『국조상례보편』의 의례는 이전의 재궁가칠 의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곡의 절차가 가칠 이후로 이동된 이유는 무엇일까?

영조는 세자와 세손의 상례를 치르면서, 담당관원들이 ‘가칠-곡-퇴장’하는 梓室加漆 절차를 마련했다. 1728년(영조 4) 효장세자상에서 영조는 재실가칠 시 “宮官 1인이 감독하고 곡한 후 돌아간다.”고 정했고,⁶⁴⁾ 영조가 재실가칠에 친림하였을 때 역시 가칠을 마친 후 곡을 하고 퇴장했다.⁶⁵⁾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되는 해인 영조 28년 의소세손상에서는 효장세자의 전례를 참고하였는데, 효장세자상과 구분하여 도제조는 가칠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친림 시에는 도제조와 승지·사관까지 모두 입시하도록 했다.⁶⁶⁾ 영조는 하나뿐인 손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재실가

권4, 「受教分類上」·梓宮結裹, “只於續儀, 書上字儀下註, 結裹儀倣此云, 而結裹節此, 不可不明白載錄, 參考各年儀軌, 成出儀註何如. 上曰, 依爲之.”).

64)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1월 22일, “都監都提調·提調及長生殿提調·宮官一員, 入來看審, 而畢漆後, 於戶外哭臨後出, 而至於承史, 則若有親臨之日, 當下教矣.”

65)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월 6일, “己酉正月初六日午時, 上御時敏堂. 梓室加漆入侍, 摠護使李光佐, 魂宮都監堂上徐命均, 長生殿提調李翊漢, 左承旨蔡彭胤, 都廳徐宗玉, 說書沈星鎮, 假注書南泰溫, 記事官許集, …… 畢漆下素金帳後, 自上舉哀, 諸臣皆哭. 止哭後, 上還就座, 諸臣以次退出.”

칠에 자주 친림했고, 가칠을 마친 후 곡하고 나오는 방식을 따랐다.⁶⁷⁾ 이렇게 ‘[가칠]-곡-퇴장’의 절차가 시행되면서, 『국조상례보편』 재궁가칠의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영조는 ‘加漆書上字儀’에서 “의식을 마친 후 곡하고 환여차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먼저 곡하는 것을 삭제하도록 수교를 내렸다.⁶⁸⁾ 이에 따라 재궁가칠 관련 의례는 모두 ‘의식-곡-환여차’의 절차로 수정되었다. 영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곡-환여차’를 연속하여 행하는 방식이 절차상 더 합당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조오례의』의 흥례 절차는 의식을 마친 후 왕이 곡하고 바로 환여차하는 절차가 일반적이었다.⁶⁹⁾ 17세기 새로 마련된 재궁가칠 관련 의주의 ‘곡-의식-환여차’의 절차가 이례적인 것이었고,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궁가칠시곡림의’의 연원을 살펴보면, 효종상과 현종상의 의주에서는 왕이 곡하고 환여차한 후에 가칠이 시작되었다(곡-환여차-[가칠]). 그런데 내상에서 왕이 가칠을 감독하기 위해 ‘곡-[가칠]-환여차’로 절차상의 변용이 이루어졌고, ‘곡-환여차’의 전형이 훼손되었다. 영조는 主喪인 왕이 가칠을 감독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곡-환여차’의 전형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곡-의식-환여차’의 비전형적인 방식을 ‘의식-곡-환여차’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조상례보편』의 가칠 관련 항목이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종상의 입시가칠을 통해 왕이 재궁가칠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 정례화되었으므로, 가칠 이후 곡하고 환여차하는 방식을

66)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3월 5일, “景夏日, 梓室加漆, 依戊申年例乎? 上曰, 然矣. 益烜曰, 加漆時都提調·提調, 皆進參乎? 上命書傳旨曰, 今番比戊申差等, 加漆時, 殯宮都監入直堂上與長生殿提調一人, 講書院官員一人, 入侍畢度日, 及有下教事, 則都提調亦爲入侍, 而親臨時, 承·史入侍, 依戊申年例舉行.”

67)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1일, “壬申四月初一日未時, 上御崇文堂. 加漆入侍時, 魂宮都監堂上李益烜, …… 漆訖. 上憑梓室哭. 諸臣少退哭, 仍退出.”

68) 『國朝喪禮補編』 권4, 「受教分類上」·梓宮結裏, “傳曰, 加漆書上字儀, 大喪, 則殿下先入侍, 卒事後哭, 還廬次. 先哭去之.”

69) 구체적인 절차는 안희재, 앞의 논문, 273~297면에 표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물론 상례의 진행 절차에 따라 퇴장 방식이 변화되고 拜禮가 추가되는 등 여러 차이점이 발생하지만, 의식 후 마지막으로 곡을 하고 퇴장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은 『국조상례보편』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통해 절차의 완결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외의 차이점은 첫째, 고유절차가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① 전자에서는 재궁가칠 당일의 조전에 맞추어 대축이 고유한다는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후자에서는 대축이 아닌 대전관이 의례를 행하고 영좌의 왼쪽으로 나아가 告文을 읽고 퇴장하면, 내시가 고문을 사르는 과정이 규정되었다.

둘째, 내시의 ‘扶引’과 ‘啓請’을 수정하여 의례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전자에서는 내시가 입장과 퇴장 시 전하를 부축하고[扶引殿下](④②③), 곡과 지곡을 계청하는(⑧⑭) 역할을 했다. 반면, 후자에서는 입장과 퇴장 시 내시가 전하를 인도할[導殿下] 뿐, 계청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먼저 ‘扶引’과 ‘導’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扶引’은 주상자가 슬픔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내시의 ‘扶引’은 소렴, 대렴 등의 염습의례와 성복에서 시행되었고, 朔望奠, 啓殯 등의 빈전의례에서는 좌통례가 왕을 ‘導’하였다.⁷⁰⁾ 그렇다면 효종상의 ‘재궁가칠시곡림의’에서부터 계속 내시의 扶引이 시행된 것은 재궁이 드러나는 재궁가칠을 염습의례와 동일하게 인식한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에서 ‘扶引’을 ‘導’로 수정한 것은 재궁가칠의를 염습의례와 빈전 의례의 중간 단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궁가칠 관련 의례는 찬궁을 열고 재궁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절차로서, 재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염습의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성빈과 성복 절차를 마쳤고, 빈전에서 거행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염습의례와는 차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내시가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에서 내시가 인도하는 경우는 內喪在先과 小喪의 염습의례와 성복의례에서 나타난다.⁷¹⁾ 왕의 입장에서 부모상의 경우에는 부축을 받고, 그 외 妻喪인 내상재선이나 子喪인 소상에서는 인도를 받는 것으로 슬픔의 단계를 구분한 것이었다.

또한 ‘계청’ 절차를 삭제한 것은 삭망전, 계빈 등의 빈전의례와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계청 절차는 효종상, 현종상, 경종상의 의주에는 원래 빠져있었던 만큼 계청에

70) 이후 발인, 천전, 반우 의례에서는 좌통례의 인도와 내시의 부축이 동시에 거행되었다. 재궁을 모시고 영결하는 절차에서 내시의 扶引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혼전의례에서는 ‘內侍扶引’이 나타나지 않는다(『국조상례보편』 권2, 「發引儀」, “左通禮, 導殿下, 內侍, 扶引, 權就歷欠.”).

71) 『國朝喪禮補編』 권1, 「小斂」, “內侍, 扶引王世子, 出[內喪在先及小喪, 則內侍, 導殿下出, 小內喪, 則內侍, 又引王世子出. 下同.]帷外.”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염습의례에는 계청이 없고, 빈전의례 중 ‘조석곡전급상식’에도 계청이 없다. ‘조석곡전급상식’은 매일 조석으로 곡하고 奠을 드리며 식사를 올리는 의례인 반면, 삭망전과 계빈 등의 의례는 奠을 크게 차리고 백관이 참여하여 拜禮하는 의례로 보다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국조상례보편』에서 ‘재궁가칠의’는 계청이 필요없는 등급의 의례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궁가칠 관련 의례에 모두 계청을 삭제하여 의례의 위상을 조정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셋째,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특징이 반영되면서 세부적인 규정이 추가되었다. 먼저, 哭位에 나아가 곡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후자는 왕뿐만 아니라 대군 이하와 수릉관·시릉관이 곡한다는 점을 명시했다.(56⑩11⑬17②122) 대군 이하는 이미 재궁가칠시곡림의에 참여했음을 인선왕후상과 숙종상의 의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⁷²⁾ 그럼에도 전자는 대군 이하의 의례를 수록하지 않았지만, 후자는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수릉관·시릉관의 의례는 『국조상례보편』에서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산릉의 의례를 담당하는 수릉관과 시릉관이 빈전의례에도 참여하도록 결정되면서, 『국조상례보편』의 성복부터 발인까지의 절차에 그들의 역할이 규정되었다.⁷³⁾

다음으로 내상과 소상의 규정을 구분하여 수록했다. 『국조상례보편』은 내상과 소상 등 신분의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⁷⁴⁾ 따라서 재궁가칠의에서도 이러한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조전에서 재궁가칠을 고하는 대전관의 경우, 내상에서는 典言, 小喪에서는 掌書가 담당했다. 총호사 등이 부복하는 장소의 경우, 대상은 빈전의 계단 아래인 반면, 내상은 閤門 밖임을 명시했다. 또한 내상의 경우, 종친과 문무 2품 이상, 六曹와 三司의 장관만 참여하고 소상이면 宮官 이하만 참여하는 규정이 수록되었다.⁷⁵⁾ 이러한 규정은 인선왕후상, 효장세자상 등 이전의 의주들에게 결정된 사항을 『국조상례보편』에서 정리한 것이었다.

72) 주)57 참조; 『肅宗殯殿都監儀軌』, “梓宮加漆時哭臨儀. …… 殿下跪俯伏哭, 王子跪俯伏哭.”

73)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6월 11일, “詰輔曰, 守陵官侍陵內侍, 五禮儀則無參拜之節, 旣因筵教, 自成服參拜, 則朝夕奠上食朔望, 恐無異同, 參拜之節補入, 何如? 上命書曰, 守陵官侍陵內侍, 朝夕奠上食朔望參拜事添入事, 依稟.”

74) 이현진, 앞의 논문, 114면.

75) 『國朝喪禮補編』 권1, 「梓宮加漆儀」, “其日, 因朝奠, 代奠官[內喪, 則典言, 小喪, 則掌書, 後倣此.] …… [內喪初度以後, 則宗親文武二品以上, 六曹·三司長官, 小喪, 則只宮官下同.]”

〈표 3〉『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 의주의 비교

		梓宮加漆時哭臨儀(『국조속오례의』)	梓宮加漆儀(『국조상례보편』)
고유	①	其日因朝奠, 太祝 , 告加漆之由	其日因朝奠, 代奠官 , 進靈座之左, 西向跪, 讀告文, 訖, 俯伏興退, 內侍, 捧告文, 焚於爐
입장	②	時至, 摠護使·殯殿都監提調·長生殿都提調及提調, 帥漆工, 入就殯殿階下, 俯伏	時至, 摠護使·殯殿都監提調·長生殿都提調·提調, 帥漆工, 入就殯殿階下, 跪 俯伏
	③	引儀, 分引宗親·文武百官, 入就外庭, 異位重行, 北向	引儀, 分引宗親 及 文武百官, 入就外庭, 異位重行, 北向 立
	④	內侍, 扶引 殿下杖就哭位	內侍, 導 殿下杖入就位
	⑤	×	大君以下, 去杖, 從入就位
	⑥	×	守陵官·侍陵內侍, 杖入就位
가칠	⑦		加漆訖
곡	⑧	內侍, 俯伏跪, 啓請跪俯伏哭	×
	⑨	殿下, 跪俯伏哭	殿下, 跪俯伏哭
	⑩	×	大君以下, 跪俯伏哭
	⑪	×	守陵官·侍陵內侍, 跪俯伏哭
	⑫	都提調及摠護使以下, 哭	都提調及摠護使以下, 哭
	⑬	贊儀唱, 跪俯伏哭, 宗親·文武百官, 跪俯伏哭	贊儀唱, 跪俯伏哭, 宗親及文武百官, 跪俯伏哭
지곡	⑭	內侍, 啓請止哭	×
	⑮	殿下止哭	殿下止哭
	⑯	×	大君以下止哭
	⑰	×	守陵官·侍陵內侍止哭
	⑱	都提調及摠護使以下, 止哭	都提調及摠護使以下, 止哭
	⑲	贊儀唱, 止哭, 宗親·文武百官止哭	贊儀唱, 止哭, 宗親及文武百官止哭
퇴장	⑳	內侍, 扶引 殿下, 還廬次	內侍, 導 殿下, 還廬次
	㉑	×	大君以下, 還次
	㉒	×	守陵官·侍陵內侍, 出
가칠	㉓	加漆訖	
퇴장	㉔	都提調及摠護使以下, 出	都提調及摠護使以下, 出
	㉕	引儀, 分引宗親·文武百官, 出	引儀, 分引宗親及文武百官, 出

비고: 비교를 위해 『국조상례보편』의 내상과 소상 관련 규정은 생략했고, 의주의 내용이 다른 경우 굵은 글자에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IV. 맺음말

18세기 숙종상의 재궁가칠에서 사관과 주서의 입시가 허용되면서, 『승정원일기』에 재궁가칠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숙종상의 경우 장생전재궁이 사용되면서, 은정 위 가칠-은정 漆布 위 가칠-전체가칠의 순서로 재궁가칠이 시행되었다. 은정 위 가칠과 전체가칠의 의례를 구분하여, 3회의 전체가칠 시에만 ‘재궁가칠시곡림의’에 따라 곡례를 행하고 백관들이 참석하였다. 반면 경종상의 경우 부판재궁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33회의 전체가칠이 거행되었다. 장생전재궁을 사용한 숙종상에서는 가칠을 마치고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곡-가칠-환여차)이었던 반면, 경종상에서는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한 효종상과 현종상의 전례를 따라 왕이 곡림한 후 여차로 돌아가고 나서 비로소 가칠을 시작하는 의주(곡-환여차-가칠)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숙종상의 전례를 근거로, 의주와 달리 재궁의 가칠을 감독한 후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을 고수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경종상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재궁가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재궁가칠 시 영조는 찬궁의 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동쪽을 향해 앉았다. 재궁가칠을 위해 찬궁의 문을 열고 소금저 등을 치우는 절차가 이루어졌고, 가칠 전후로 관원들과 영조가 직접 재궁의 상태를 奉審했다. 영조는 직접 손으로 재궁의 표면을 만져보고 손톱으로 눌러보면서 재궁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했다. 또한 가칠 과정 전체를 감독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칠포사용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칠포는 이미 가칠을 마친 장생전재궁의 덮개판을 고정할 때 유용한 것이지만 새로 만든 재궁을 전체가칠할 경우에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구례를 따라야 한다는 점과 칠포가 견고함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따라 칠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영조 대에는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통한 재궁가칠 의례의 성문화가 이루어졌다. 『국조속오례의』의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의주를 절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종상에서 영조는 의주와 달리 가칠 과정을 감독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국조속오례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국조속오례의』 간행 이후 8년만인 1752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새로운 재궁가칠 의주가 마련되었다.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명은 ‘梓宮加漆儀’지만, 가칠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곡과 가칠, 그리고 왕이 여차로 돌아가는 순서가 변화되었다. ‘재궁가칠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왕이 재궁가칠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가칠을 마친 후 곡하고 퇴장하는 의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조상례보편』의 ‘재궁가칠의’는 절차상의 정합성과 의례적 위상을 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17세기 새로 마련된 재궁가칠 의주의 ‘곡-의식-환여차’의 비전형적 방식을 ‘의식-곡-환여차’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칠-곡-환여차’의 절차가 확립되었다. 또한 내시의 ‘부축[扶引]’을 ‘인도[導]’로 수정한 것은 재궁가칠의를 염습의례와 빈전의례의 중간 단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시의 ‘扶引’은 소렴, 대렴 등의 염습의례와 성복에서 시행되었고, 朔望奠, 啓殯 등의 빈전의례에서는 좌통례가 왕을 ‘導’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재궁가칠 의례는 재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염습의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미 성복 이후 빈전에서 거행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염습의례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내시가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계청’ 절차를 삭제한 것은 삭망전, 계빈 등의 빈전의례와의 의례적 위상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특징이 반영되면서, 의례의 대상이 확대되고 내상·소상과의 차별적인 규정이 추가되었다.

聖人君主를 지향하는 영조는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여 국상의례를 재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정권자인 영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지만, 『국조상례보편』의 규정들은 17세기 이래로 축적된 국상의례의 변화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었다. 여러 차례의 국상을 통해 재궁가칠 의주가 축적되었고, 이러한 의주들을 의례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재검토함으로써, 『국조상례보편』에서의 성문화가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 『경종실록』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國朝喪禮補編』
『[孝宗]殯殿都監儀軌』(奎15072) 『稽制司謄錄』(K2-2917) 『[仁宣后]殯殿都監儀軌』(奎13535)
『仁宣王后國恤謄錄』(K2-2997) 『[顯宗]殯殿都監儀軌』(奎13540) 『顯宗大王國恤謄錄』(K2-3035)
『[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奎13544)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奎13556-1) 『[肅宗]殯殿都監儀軌』
(奎15072) 『[景宗]殯殿都監儀軌』(奎14854)
- 김자현 저, 김백철·김기연 역, 『왕이라는 유산』, 너머북스, 2017
이 옥,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민속원, 2017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 경세진, 「합문을 통해 본 조선시대 궁궐의 내외개념」,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윤정, 「인조~숙종 대 재궁가칠(梓宮加漆)의 시행과 의미」, 『민속학연구』 47, 국립민속박물관, 2020
박미선,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흥례Ⅱ』, 국립중앙박물관, 2018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실행공간의 건축특성」,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10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0
이원택, 「현종대의 服制論爭과 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한국사상사학』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장경호, 「朝鮮後期 殯殿建築에 대한 研究」,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7

The Practice and Legalization of the Lacquer of Jaegung in 18th Century

Kim, Yun-jung

The King Yeongjo, who was aiming for a saintly monarch who practiced filial piety, reorganized the rituals of the National Funeral. The role of King Yeongjo, the chief decision maker, was very important in this process, but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Funeral Rituals of the Joseon Dynasty were largely based on the changes in state rituals that had been accumulated since the 17th century. Through several national Funerals, the ritual vessels to be re-ruled were accumulated, and by thoroughly reviewing them in accordance with ritual standards, the legalization in *Gukjo-SangryeBopyeon* was completed.

As access of sakwan an juseo to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was allowed in the funeral of King Sukjong on the 18th century, the Diary of Seungjeongwon contained specific details on the ritual to be re-established. The use of the connected jaegung in kyungjong' funeral served the entire Lacquer of Jaegung in 33times and Followed the precedent of funeral of King Hyojong and King Hyeonjong. The King Yeongjo supervised the lacquer of jaegung and returned to yeocha.

The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in *Gukjo-Sokoryeui* was a compromise between the Funeral of King Sukjong and the Funeral of King Gyeongjong. Unlike protocol, the King Yeongjo supervised the process of Lacquer on Jaegung in the Funeral of King Gyeongjong, but this change was not reflected in *Gukjo-Sokoryeui*. Eventually, eight years after *Gukjo-Sokoryeui* was published, a new protocol was set up for *Gukjo-SangryeBopyeon*, which was compiled in 1752. The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in *Gukjo-SangryeBopyeon* has the meaning of establishing procedural consistency and ritual status. The protocol of Lacquer on Jaegung-wailing-returning to yeocha has been established. The change from the eunuch's holding to delivery of king defined the method in the middle of rituals of yeomsup and rituals in beanjun.

Key Words : The National Funeral, Lacquer on Jaegung, *Gukjo-Oryeui*, *Gukjo-Sokoryeui*, *Gukjo-SangryeBopyeon*

